

# 삼성

## 기업재해보장보험 (2501)(무배당)

| 한눈에 보는 상품특징 |

### 사업주라면 꼭 필요한 보장

종업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재사고로부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

### 만기환급금을 통한 기업 운영자금 확보 가능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시 납입한 보험료의 50%~100% 환급 가능

### 보험계약 이후 편리한 관리

피보험자 증도교체 및 퇴직시 개별 계약 전환 가능

### 비용 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

수익자가 종업원이라면 종업원 복리후생비 처리로 법인세 절감 혜택



##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진만큼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사망	산업재해 사고
약 5.5명	일평균 375명
2,016명	2023년 136,796명

※출처: 2023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2024

### 2023년 근로자 민사소송 현황



※출처: 2023년도 소송상황 분석, 근로복지공단, 2024

# 기업의 산재리스크, 그 해결방법은 고민 해보셨나요?

## 0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책임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해당" 처벌범위 넓힌 검

"업무상 위험이 과로사 불러" 해석, 업계 파장 클 듯 산업현장 외 일반 사무직도 적용... 극단선택은 제외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근로자의 내면에 원인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자살 등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담겼다. 600여 쪽에 달하는 해설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로, 이달 초 전국 검찰청에 배포됐다. 해설서에 따르면 검찰은 과로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부상자가 나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도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있다.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에서 빠져있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시행령은 화학적 인자로 인한 급성 중독 24가지만 직업성 질병으로 규

정했다. 최근 경남 창원외 한 공장에서 발생한 트리로 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검찰은 이같이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보다 넓게 해석해 중대산업재해로 보면서 과중한 업무 외에 근로자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자살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해설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직접적 원인이 작용 환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뤄진 경우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중대재해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출퇴근때 통근버스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자가용은 제외

기업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대표이사(CEO)와 별도로 두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이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대로 일반 사무직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사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넘어짐, 감전, 과로사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는 면제된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만 모호하다. 시행령에서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 기업이 무슨 법령의 의무를 다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인용해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발간사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기존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시행했고, '중대재해법 대응 TF'를 통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벌칙 해설서와 강화된 양형 기준을 준비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2년 2월 24일, 박윤애 기자]

## 02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 부분)

-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당사의 보증을 통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벌금'에 대한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 시행일: '22.1.27. (50인 미만 사업장 등 '24.1.27.)

<b>사망시</b>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능
<b>그 외</b>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0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이란?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급성중독, 의식 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B형 간염, C형 간염 등 혈액 전파성 질병,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자세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1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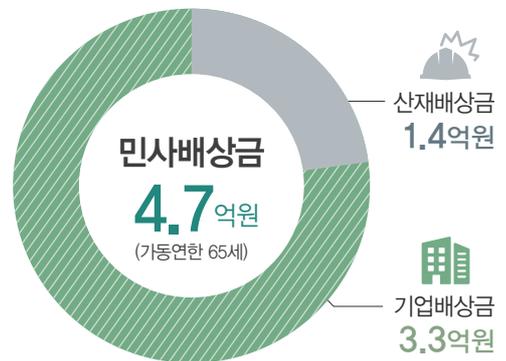
## 02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소송은 기업에 더욱 큰 리스크입니다.

### 03 민사소송 제기시 기업은 큰 경제적 부담 발생

산재 보험금	유족급여 13,000만원	장의비 1,208만원	<b>14,208만원</b>
민사 배상금	일실수입 35,883만원	일실회복금 1,928만원	<b>46,611만원</b>
	위자료 8,800만원		

[기준: 남 30세, 월 급여 300만원, 정년 60세, 본인과실 20%, 가동연한 65세]

 필요자금 4.7억원 -  준비자금 1.4억원 =  부족자금 3.3억원



- ※ 기업주의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배상금액은 기존 판례[대법원 2018다248909]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단순예시로 실제 금액 및 산출식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삼성 기업재해보장보험」은 기업주를 위한 기업전용 보장상품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재해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상 대형사고의 경우 재해보상금으로 인한 분쟁과 자금압박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재해보상금 및 자금압박 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사 상호 간의 신뢰와 화합으로써 회사발전에 기할 수 있습니다.

## 1 각종 재해사고시 보험금 지급

✓ 특약 가입으로 비업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해사고에 대하여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 **교통재해보장특약:**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교통재해장해보험금

· **재해치료보장특약:**

중화상진단보험금 / 재해성형보험금 /  
재해골절진단보험금 / 5대재해골절진단보험금 /  
재해수술보험금

· **김스치료(부목제외)특약:**

김스치료보험금



## 2 만기시 기납입 주보험료의 70% 지급

✓ 주보험 70% 환급형 가입시 만기시에는 기납입 주보험료의 70%를 지급하여 드림으로써 자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보험 70% 환급형 외에도 50%, 80%, 90%, 100% 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종(재해사망보장형)의 경우  
신상해보장G특약(무배당) 가입시  
주보험과 동일한 비율의 기납입  
특약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종업원 퇴직시 피보험자 교체 가능

✓ 종업원의 중도 퇴직시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종업원)를 교체하여 만기시까지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 변경시에는 계약자적립액 (미경과보험료 포함)을 정산한 후 변경된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주보험 및 해당특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4 납입보험료 손비인정(법인세 절감혜택)

✓ 기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수익자 = 종업원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참조)

※ 손비처리 등 세제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종업원 복지까지 고려하는 기업 이미지 형성

✓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근로의욕의 고취, 장기근속, 우수인재의 확보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6 수익자 지정 가능

✓ 개별 피보험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보험금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자(회사)가 갖습니다. 단,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를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와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로 구분합니다.

※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할 경우 보험료 중 소멸되는 부분에서만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 기업재해보장보험 (2501)(무배당)

■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제조업, 위험3등급, 중위험, 1종(재해사망보장형), 4형(70%환급형), 월납

[단위: 원]

구분	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납입기간	남자	여자
주보험 1종(재해사망보장형) 70%환급형	1,600	10년만기 전기납	11,520	9,712
신재해보장G특약E(무배당) 70%환급형	2,400	10년만기 전기납	24,600	20,736
재해보장G특약E(무배당)	4,000	10년만기 전기납	2,520	1,400
신산업재해사망특약E(무배당)	5,000	10년만기 전기납	1,000	1,000
신재해장해연금G특약E(무배당)	3,000	10년만기 전기납	420	180
재해치료보장특약E(무배당)	1,000	10년만기 전기납	2,600	2,000
킵스치료(부목제외)특약E(무배당)	1,000	10년만기 전기납	150	130
신재해입원특약E(무배당)	3,000	10년만기 전기납	1,500	1,500
합계			44,310	36,658

\* 성별이 같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재해 관련 보장의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 ■ 상기 예시에 따른 예상 지급 보험금


**신재 중 재해 사망時**  
**1억 9천만**


**신재 이외의 재해 사망時**  
**1억 4천만**


**장해지급률 80% 장해時**  
**총 지급금액 최대 2억 6천만**  
 (8천만 + 매년 900만x20년)

■ 보험료 납입 비용 분석 기준: 상기 동일, 월납입보험료 80,968원, 남녀 1명 총 2명 가입 기준



총 납입 보험료 **9,716,160원**



만기보험금 **5,591,710원**



10년간 총 법인세(지방소득세포함) 예상결제금액 **2,030,677원**

\* 법인세 예상결제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초과 ~ 200억이하, 만기시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지정하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상되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합산결제금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관련법규 변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단순 예시로서, 실제 가입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비처리 등 세제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험료 예시에 따른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월납입보험료 80,968원, 남녀 1명 총 2명 가입

경과년도	납입보험료 누계(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971,616	40	0.0%
3년	2,914,848	1,064,340	36.5%
5년	4,858,080	2,388,690	49.1%
10년	9,716,160	5,591,710	57.5%

##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삼성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1588-3114), 금융권 두넛콜(www.donotcall.or.kr)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삼성생명과의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로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은 부여받지 않았으나 청약을 권유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